

의안번호	2216809
의 퇴 인	정춘생의원
회 답 일	2026. 4. 17.
추 계 번호	26D08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 후보자가 1인이거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3,500만원, 2030년 6억 8,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3억 2,100만원(연평균 2억 6,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연평균
후보자 1인이거나 의원정수 미달 시 찬반투표 실시 (안 제150조제1항)	635	—	—	—	686	1,321	264

- 주: 1. 후보자 1인이거나 의원정수 미달 시 찬반투표 실시(안 제150조제1항)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현행법은 후보자가 1인이거나 의원정수 미달인 경우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493명의 후보자가 투표없이 당선인(이하 '무투표 당선인'이라 한다)으로 결정
 3. 본 추계에서는 2026년과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493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발생하고 개정안에 따라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0조제1항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제190조제2항 ¹⁾ 또는 제191조제2항 ²⁾ 에 따라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옆에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 1) 안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50조제1항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2026년과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 수가 493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무투표 당선은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전 해당 공직선거의 무투표 당선인 수가 다음 공직선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인은 493명(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의원 106명, 기초의회의원 381명)³⁾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⁴⁾
-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제주도에에서만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16명의 무투표 당선인이 있으나, 2026년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제외함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1%	2.3%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후보자 1인이거나 의원정수 미달 시 당선인 결정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표용지 인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예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등록마감 이후에 후보자 1인 또는 의원정수 미달인 선거구가 정해지면 현행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용지 인쇄비용 발생
 -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인마다 7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하며 무투표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의 선거인은 6매 이하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
 - 즉, 무투표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라도 투표소 설치, 투표 및 개표관리 등을 위한 비용은 동일하게 지출
 - 최종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현행법에서는 투표하지 않았던 후보자에 대한 찬반표시를 위한 투표용지 인쇄 비용
- 본 추계에서는 2026년과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93명의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찬반투표 실시대상 후보자 수(493명), 평균 선거인수, 투표용지 인쇄단가, 투표율 60%⁵⁾를 곱하여 산출
 - (평균 선거인 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대상별 평균 선거인 수는 기초단체장 199,784명, 광역의원 57,960명, 기초의원 43,836명으로 추정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2030년 선거인 수도 산출
 - 2022년 기준 선출대상별 선거구 당 평균 선거인 수는 기초단체장 196,033명, 광역의원 56,872명, 기초의원 43,013명⁶⁾
 - 2022년 평균 선거인수에 연도별 18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⁷⁾을 적용하여 산출

5) 일반적으로 모든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시 적용하는 투표율은 대통령선거 80%, 국회의원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60%

6)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 선거인 수는 44,303,449명이고 선출대상별 선거구 수는 기초단체장 226개, 광역의원 779개, 기초의원 1,030개

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2023년 12월 발표)를 활용하여 2023~2030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18세 이상 인구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산출한 결과, 2023년 0.54%, 2024년 0.54%, 2025년 0.39%, 2026년 0.43%, 2027년 0.33%, 2028년 0.29%, 2029년 0.34%, 2030년 0.3%

[표 2] 평균 선거인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단체장	199,784	200,443	201,025	201,708	202,313
광역의원	57,960	58,152	58,320	58,518	58,694
기초의원	43,836	43,981	44,108	44,258	44,3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투표용지 인쇄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예산 기준 투표용지 인쇄 단가는 42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3] 투표용지 인쇄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투표용지 인쇄 단가	44	45	46	47	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후보자 1인이거나 의원정수 미달 시 당선인 결정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3,500만원, 2030년 6억 8,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3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후보자 수 (a, 명)	기초단체장	6	—	—	—	6	—
	광역의원	106	—	—	—	106	—
	기초의원	381	—	—	—	381	—
투표용지 인쇄단가(b, 원)		44	—	—	—	47	—
평균 선거인수 (c, 명)	기초단체장	199,784	—	—	—	202,313	—
	광역의원	57,960	—	—	—	58,694	—
	기초의원	43,836	—	—	—	44,391	—
추가재정소요 (=a×b×c×60%, 백만원)	기초단체장	32	—	—	—	34	66
	광역의원	162	—	—	—	175	337
	기초의원	441	—	—	—	477	918
	합계	635	—	—	—	686	1,3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직전 공직선거의 후보자 수,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